

# 전남 선착장에 버려진 선박들 ‘골칫거리’

### ‘어촌 고령화’ 등 원인 매년 100척 이상... 기름 유출 등 피해 번호 지워져 선주 파악도 안돼...도, 매년 처리비만 수 억원

#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지난해 7월 정박중인 1286t급 준설펀이 가라앉아 기름이 유출됐다. 이 선박은 무안군에서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선주에게 선박을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방치 선박이었다. 결국 무안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8억 6000여 만원을 들여 대형 크레인으로 인양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소유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 방치선박 처리를 요청했다”며 “사유재산이다보니 군청에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 해안에서 매년 100여 척의 선박이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치 선박은 침수되면서 기름이 유출되고 쓰레기 등이 쌓여 악취를 풍기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항로를 방해해 선박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100척이 넘는 방치 선박을 제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선박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남도는 403척(2020년 140척, 2021년 127척, 2022년 136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

했다. 올해도 총 124척의 방치 선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의 해안에 있는 11개 시·군 중 매년 방치 선박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곳은 완도(최근 4년 평균 40척)이고 신안(평균 22척)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방치되는 어선들은 대부분 5t 미만의 소형 선박이다. 방치 원인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파손된 채 떠돌아다니다가 선박의 소유주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면서 기존 선박을 버리고 가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고령의 어민들이 어업에 나서지 못해 선박을 그대로 두거나, 선박 처리 비용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어민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선박들도 많다”며 “배 통행에 방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방

치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어업규모가 가장 큰데다 소형 어선이 가장 많고 고령의 어민들이 많다보니, 방치 선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전남도에만 전국 어선 수의 42%에 달하는 2만 7000여척의 어선이 등록됐고 이중 1~5t 규모의 소형 선박은 1만 6000여척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매년 어촌계와 협력해 일제 조사와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년도 방치선박 예산을 모두 사용한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을 늘려주는 등, 방치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남선연탄’ 문 닫는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남선연탄’이 다음달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14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1954년부터 지역민들에게 연탄을 공급해온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남선연탄이 공장 가동을 멈춘다.

남선연탄은 광주·전남에 16개 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의 겨울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다음달을 끝으로 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남선연탄은 연탄 호황기였던 1980년대 한해 1억 5000만장까지 판매했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400만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선연탄 관계자는 “광업소의 잇단 폐광으로 석탄 공급이 어려워졌고, 경영난도 겹쳐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순에 있는 화광연탄은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단민 기자 kdi@

## “여수 여문초 체육관 사고는 부실 시공 탓”

### 천장 구조물 붕괴 15명 부상

여수시 문수동 여문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구조물이 붕괴돼 교사와 학생 14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부실한 시공과 점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20분께 여수시 여문초등학교 강당 천장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교사 1명과 학생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모두 생명이 지장은 없었지만, 50대인 교사는 안면부위가 골절됐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과 ‘수박 겉핥기’ 식의 안전점검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체육관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9월에 지어졌고, 지난해 3월 안전점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14일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석고보드 가벽 받침틀이 석고보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통째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과정에서 가벽 골조와 가벽 받침틀을 고정하는 연결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학교공사는 개혁을 앞두고 준공을 하는 만큼,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연결부 시공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안전점검시 시간 촉박 등의 이유로 구조물 상부까지 직접 올라가 점검하지 않고, 밑에서 육안으로 점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사 등 작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시공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지하철 공사중 상수도관 파열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사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름 150mm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이 공사장 내부로 쏟아졌다. 굴착작업 중 중장비로 상수도관 외부에 있던 5cm 크기의 돌출부를 건드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광주시는 파손된 관로 50여cm를 교체했으며 별도의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독자 제공)

## 법원 “학동참사 원인은 ‘원청 불법 하도급’”

### 하도급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을 학동 참사의 한 원인으로 보고 불법하도급을 한 원청 대표와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빼먹은 공사대금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하도급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체공사대금으로 총 49억5800여만원을 하도급 받아 이중 33억여원에 해당하는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상차 공정을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공사대금 33억원 가운데 실제로는 11억 6300만원만 백솔건설에 공사비로 주기로 하고 B씨에게 공사가 끝나면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학동 사고의 원인 중 하나를 불법하도급에 있다고 봤다. 실질적인 단가가 계약상의 단가보다 낮아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위험을 가중시켰고, 해체계획서상 철거방식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쇄적인 재해정의 구조적 문제로 건물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 서구 ‘안일행정’에 패소 잇따라

### 재건축조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 등

광주시 서구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광주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께 서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3월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구는 지난 2019년 4월 및 2020년 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2900여원을 부과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조합은 기존 건축물 하수량을 공제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구가 기존 건축물 하수량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가능성, 공공 하수도 신설·증설 필요성, 기존 공공 하수도의 처리량 증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을 위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조합측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주민 A

씨가 광주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구가 부과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00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

사건 부지에는 1972년 건물이 지어졌고, A씨의 어머니는 1988년 이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뒤 지난 2004년 A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2017년 6월 지적 재조사가 완료돼 토지대장에 그대로 기재됐다.

서구는 국유재산법을 들어 이 토지가 무단점용을 했다며 지난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20년 이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됐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A씨의 어머니가 토지·건물을 구매한 1988년 3월을 기점으로 20년이 되는 2008년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